

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0일

강화군의회



1. 조 례 명 :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정이유

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만성적인 영농인력 부족해결 및 영농 구인·구직 알선을 통한 안정적 영농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 ~ 제4조)

- 설치 : 농업기술센터

- 영농 구인·구직, 취업알선, 영농일자리 및 고용정보 관리 등

다. 조직·인력운영 및 자격 등(안 제5조 ~ 제6조)

4. 조례안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강화군의회 의장(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(☎930-3504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 :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

- 팩 스 : 032-930-3509

- 주 소 : (23031)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)

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강화군이 설치하는 “농촌일자리지원센터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촌일자리지원센터”란 영농상담, 영농구인·구직, 영농정보 제공, 영농 교육훈련 안내,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상담원”이란 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 또는 “농촌일자리지원센터” 운영부서의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며, 센터는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-2 (농업기술센터 내)에 둔다.

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자리지원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위탁 협약은 끝

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영농구인·구직 상담 및 알선
2. 영농구인·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
3. 영농취업상담·알선,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
4.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
5. 영농구인·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
6. 영농구인·구직자 영농기술교육, 실습에 관한 사항
7. 강화군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
8.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.

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3명의 관리인력을 둔다.

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채용 시 강화군 및 센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격 및 근무) ① 센터장은 농촌일자리지원 업무 담당이 겸임한다. 다

만,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중개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위탁받은 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상담원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

제7조(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

· 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·결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 영농구인·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중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센터 관련 담당부서 과장
2. 농촌인력중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·농업인단체·농가·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 지원)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받은 자의 의무) 위탁받은 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 운영 및 영농인력 정보 제공 등 수탁업무 수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2.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지켜야 한다.
3. 보조금의 신청·집행·정산 등 모든 회계처리는 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위탁받은 자가 제4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
2. 위탁받은 자가 사회적·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3. 위탁받은 자가 관련법규 및 조례,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
5.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·멸실한 경우
6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위탁 취소일부터 30일 전까지 위탁시설의 관리재산 및 관련서류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관계공무원은 14일 전까지 제출된 목록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·감독 및 감사)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,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·감독할 수 있고,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 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